

● 제301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
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 2413)

2021. 6. 16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2413

I. 동의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 안 일 : 2021. 5. 25.
- 다. 회 부 일 : 2021. 5. 31.

2.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출이유

- 고령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, 수요대비 생활 사회간접자본(SOC)인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하며,
-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립 노인요양원을 건립하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요청함.

나. 주요내용

1) 건립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-4
- 시설규모 : 지하 2층, 지상 4층, 연면적 12,271㎡
- 공사비 : 총332억원(공사비 293억, 감리비 22억, 설계비 등 19.5억)
- 공사기간 : 2019. 4. ~ 2021. 12.(32개월)
- 개관 : 2022. 1월

2) 시설용도

- 노인요양시설(120명), 주야간보호센터(50명)

| 구분 | 층별 용도 | 면적(단위:㎡) |
|-------|---|----------|
| 지상 4층 | 직원식당, 직원휴게실, 라운지, 주방 | 252.99 |
| 지상 3층 | 치매전담실(4인실 2개, 2인실 1개, 1인실 1개), 요양실(4인실 12개, 2인실 1개), 프로그램실, 요양보호사 휴게실 | 1,629.35 |
| 지상 2층 | 치매전담실(4인실 2개, 2인실 1개, 1인실 1개), 요양실(4인실 11개, 2인실 1개, 1인실 2개), 프로그램실, 요양보호사 휴게실 | 1,662.00 |
| 지상 1층 | 데이케어센터(치매전담실), 사무실, 회의실, 공유라운지, 대형프로그램실, 치료실 | 1,173.73 |
| 지하 1층 | 주차장(101대), 전기, 기계실 | 3,890.56 |
| 지하 2층 | 주차장(91대) | 3,579.33 |

3) 주요 위탁내용

○ 위탁기간 : 5년(2021.11.1.~2026.10.31.)

※위탁운영 개시일은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

○ 위탁사무

- 노인요양시설(주야간보호센터 포함) 관리 및 운영
-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·기능회복·지역복지사업
-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4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(관리·운영의 위탁)

○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질환(치매 등)이 있는 경우 신체활동지원, 인지능력 향상, 식사제공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

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가 필요함

-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과 차별성이 있어 현장 경험을 전문적으로 축적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)

⇒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⇒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
○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(관리·운영의 위탁)

⇒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2021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(적정)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의 취지

- 본 동의안은 ‘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’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¹⁾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,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노인요양시설(주야간보호센터 포함) 관리 및 운영
 -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·기능회복·지역복지사업
 -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
-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5조제1항²⁾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1항³⁾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시설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

2) 「노인복지법」 제35조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3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
2 마포실버케어센터 설치 현황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

가. 마포실버케어센터 설치 현황

- 서울시에서는 고령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, 수요에 비해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여 실버케어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,
- 마포실버케어센터는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, 노인요양시설(120명)과 주야간보호센터(50명)를 운영하여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·기능회복·지역복지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.

<마포실버케어센터 설치 추진경과>

- 2019. 4. 15. : 공사 착공
- 2019. 7. 25. : 서울창업허브단지 시험동 철거 완료
- 2019. 9. 22. : 상하수도, 전기통신선로 이설완료
- 2020. 5. 25. : 토공사 완료
- 2020. 6. 26. : 기초 콘크리트 타설 완료
- 2021. 4. 9. : 골조공사 완료, 형틀 자재 정리 및 내부 조적공사 진행중
- 2021. 12. 14. : 공사 준공(예정)

- 2020년 12월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 13,630명 중 12,323명이 입소하여 충원율이 90.4%이며, 13,148명이 등급판정 후 시설입소를 대기하고 있어 대기율은 96.5%인 것으로 확인되었음.
- 특히, 시립 등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대기율은 185.8%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,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.

〈노인요양시설 현황〉

| 구분 | 계 | 공공 | | | | | 민간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소계 | 시립 | 시립 병설 | 구립 | 비영리 법인 | 소계 | 영리 법인 | 개인 | |
| 시설(개소) | 218 | 79 | 7 | 4 | 22 | 46 | 139 | 8 | 131 | |
| 종사자(명) | 8,554 | 4,335 | 932 | 69 | 1,059 | 2,275 | 4,219 | 435 | 3,784 | |
| 요양보호사(명) | 5,679 | 2,842 | 612 | 42 | 671 | 1,517 | 2,837 | 295 | 2,542 | |
| 이용자 (명) | 정원 | 13,630 | 6,681 | 1,419 | 92 | 1,473 | 3,697 | 6,949 | 722 | 6,227 |
| | 현원 | 12,323 | 6,194 | 1,372 | 87 | 1,436 | 3,299 | 6,129 | 630 | 5,499 |
| | 충원율(%) | 90.4 | 92.7 | 96.7 | 94.6 | 97.5 | 89.2 | 88.2 | 87.3 | 88.3 |
| 대기자 (명) | 인원 | 13,148 | 12,415 | 3,685 | 378 | 4,105 | 4,247 | 733 | 459 | 274 |
| | 대기율(%) | 96.5 | 185.8 | 259.7 | 410.9 | 278.7 | 114.9 | 10.5 | 63.6 | 4.4 |

나. 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장기요양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질환(치매)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하여 식사제공, 신체활동지원, 정서지원, 인지능력 향상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
- 마포실버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사무는 요양보호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에 의한 돌봄서비스 제공능력이 중요하며, 관련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지닌 민간의 전문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라 할 것임.
- 동 위탁사무의 특성상 장기요양의 특성과 요양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복지 업무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실버케어센터 사무에 대한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3 종합 검토의견

- 고령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의 사유로 요양시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하며,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마포실버케어센터 설치·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.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⁴⁾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문 의 처

류민국 입법조사관 (02-2180-8140)

4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